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5. 12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5월 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5월 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7. 5. 10) 상정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97. 5. 12)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현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무의 위임 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중 “3. 건축신고의 수리” 사무내용변경 (안 별표 제3호)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허영훈)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등의 개정에 의해 건축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권한위임 사무중에서 삭제 또는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신고의 수리 권한을 새로 동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신고의 수리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용도변경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의 후속조치로 타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 절차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제출년월일 : 1997년 5월 1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무의 위임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중 “3. 건축신고의 수리” 사무 내용 변경
(안 별표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및 근거

- 건축법 제9조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합의사항 :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3. 건축신고의 수리</p> <p>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p> <p>나.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 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p> <p>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 에서 증축하는 건축물</p>	<p>건축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 조, 시행규칙 제12조</p>	<p>동 장</p>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2(생략)</p> <p>3. 건축신고의 수리(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이 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경미한 용 도 변경, 연면적의 합계 가 85㎡이하인 단독주 택,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p> <p>4. -16(생략)</p>	<p>건축법 제9조 동 장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p> <p>1. -2(현행과 같음)</p> <p>3. 건축신고의 수리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 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p> <p>나.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 인 경우에는 100제곱 미터)이하인 건축물</p> <p>다. 건축물의 높이를 3 미터이하의 범위안에 서 증축하는 건축물</p> <p>4. -16 (현행과 같음)</p>